

운송 용역 계약서

홈버 주식회사(이하 "제휴사"라 칭함)와 씨브이에스넷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휴사"의 고객이 "회사"의 점포를 이용하여 배송을 의뢰한 상품을 "회사"의 책임하에 "제휴사"에게 배달 인도하기까지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 대상 점포

"회사"의 계약 점포(GS25, GS수퍼마켓, lalavla 등) 중 Postbox장비(이하 "장비"라 칭함)가 설치된 점포에 한한다. 단, "회사"는 장비 설치 점포의 변경 및 확대 시 즉각 "제휴사"에게 통보한다.

제 3 조 화물 포장 및 규격

1. "제휴사"는 소화물의 분실,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물 박스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토록 "제휴사"의 고객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2. "제휴사"는 고객에게 지정 포장재를 발송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중량이 30kg을 초과하거나 박스 3번의 합이 160cm초과, 또는 내품가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 4 조 화물의 내용 확인

1. 화물은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에 게시된 상호 협의된 접수 채널을 통해 배송이 신청되었고 승인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한 승인거래 상품에 한하며, 그 외의 상품의 배송 중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해서는 "제휴사"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제휴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사고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제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화물의 포장이 부실한 경우에 "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화물을 재포장하거나 테이프로 붙일 수 있다. 단, "회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품 사고에 대해서는 "제휴사"가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과 의무

1. "제휴사"의 책임과 의무
 - (1) "제휴사"는 "고객"에게 상품 접수방법, 포장방법 안내 및 박스당 무게는 3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2) "제휴사"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3) "제휴사"는 "회사"에게 송수화인 정보 및 상품 정보가 포함된 승인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2019 년 8 월 21 일

“제휴사”
홈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6
메모빌딩 5층

대표이사 조 남 설



“회사”
씨브이에스넷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주빌딩 13층

대표이사 이 승 민



CSNET